

## 평촌 어바인 퍼스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5.24(목) 입니다.(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3항, 제25조3항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는 물론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018.05.24(목)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 가능합니다. 단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 하며, 기타지역에서(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http://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http://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http://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http://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 분부터 적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특별공급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http://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신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http://www.apt2you.com))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국민은행 접수 불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5.04.0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85㎡이하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85㎡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하며,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고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urvine.co.kr](http://www.urvine.co.kr))에 공개되며, 예비입주자 지위 공개 기간(최초 공급계약 체결일 +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
-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4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세대수로 전환함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특별공급 예비자를 우선 배정하며 이후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물량으로 전환하여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에 신청한 자는 일반공급 신청도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함.  
또한, 동일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www.urvine.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8.06.19)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자격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  
- 청약통장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 발생요건 완화 :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발생 요건은 "1년,12회 납입" 으로 변경(단, 청약통장별 해당 가입은행의 납입인정 예치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함)이며, 청약은 "1,2순위"방식으로 간소화  
- 입주자 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3개월 청약제한 기간(3개월)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 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60㎡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 '60㎡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당 사업지 1번, 47번국도 인접으로 인한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 하시어 청약 및 계약 전 확인 하셔야 합니다.

## I 공급 내역 및 공급 금액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도시정비과 - 제5324호 (2018.05.2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29층 34개동 총 3,850세대 (조합분양 1,656세대, 보류지 19세대, 임대 193세대 포함) 중 일반공급 1,982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202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20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99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1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구분	공동주택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타 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계	최하층우선 배정세대 (신청가능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소계			
민영 주택	2018000687-01	39.2600	39	39.2600	18.3840	57.6440	27.7570	85.4010	20.8460	43	43	85	13	184	238	422	20
	2018000687-02	46.9400A	46A	46.9400	20.7180	67.6580	33.1860	100.8440	24.9230	2	2	4	1	9	11	20	4
	2018000687-03	46.9200B	46B	46.9200	21.4920	68.4120	33.1730	101.5850	24.9120	1	1	2	-	4	5	9	2
	2018000687-04	46.8900C	46C	46.8900	21.0710	67.9610	33.1510	101.1120	24.8970	1	1	2	-	4	6	10	2
	2018000687-05	59.8700A	59A	59.8700	25.5560	85.4260	42.3280	127.7540	31.7870	64	64	127	19	274	358	632	62
	2018000687-06	59.5200B	59B	59.5200	26.3610	85.8810	42.0810	127.9620	31.6020	22	22	43	7	94	120	214	20
	2018000687-07	84.6000A	84A	84.6000	29.7450	114.3450	59.8120	174.1570	44.9180	60	60	119	18	257	336	593	37
	2018000687-08	84.1300B	84B	84.1300	30.9970	115.1270	59.4810	174.6080	44.6690	9	9	17	3	38	44	82	5
합 계									202	202	399	61	864	1,118	1,982	152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 단지별 면적이 각각 상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단위세대 계약면적 등은 소수점이하 단수 정리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sup>2</sup>, 원)

주택형	층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18-06-19	2018-07-18	2018-10-25	2019-02-25	2019-06-25	2019-11-25	2020-03-25	2020-08-25		
39.2600 (101,102층)	1층	17	114,780,000	155,320,000	270,100,000	10,000,000	17,010,000	27,010,000	27,010,000	27,010,000	27,010,000	27,010,000	27,010,000	27,010,000	81,030,000
	2층	20	117,880,000	159,520,000	277,400,000	10,000,000	17,74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83,220,000
	3~4층	40	120,390,000	162,910,000	283,300,000	10,000,000	18,330,000	28,330,000	28,330,000	28,330,000	28,330,000	28,330,000	28,330,000	28,330,000	84,990,000
	5층	20	122,900,000	166,300,000	289,200,000	10,000,000	18,920,000	28,920,000	28,920,000	28,920,000	28,920,000	28,920,000	28,920,000	28,920,000	86,760,000
	6~15층	159	126,810,000	171,590,000	298,400,000	10,000,000	19,840,000	29,840,000	29,840,000	29,840,000	29,840,000	29,840,000	29,840,000	29,840,000	89,520,000
	16~29층	120	129,190,000	174,810,000	304,000,000	10,000,000	2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91,200,000
39.2600	6~15층	22	125,530,000	169,870,000	295,400,000	10,000,000	19,540,000	29,540,000	29,540,000	29,540,000	29,540,000	29,540,000	29,540,000	29,540,000	88,620,000

(211동)	16~29층	24	127,870,000	173,030,000	300,900,000	10,000,000	20,090,000	30,090,000	30,090,000	30,090,000	30,090,000	30,090,000	30,090,000	90,270,000
46.9400A	1층	2	138,790,000	187,810,000	326,600,000	10,000,000	2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97,980,000
	2층	4	142,570,000	192,930,000	335,500,000	10,000,000	23,550,000	33,550,000	33,550,000	33,550,000	33,550,000	33,550,000	33,550,000	100,650,000
	3~4층	8	145,630,000	197,070,000	342,700,000	10,000,000	24,270,000	34,270,000	34,270,000	34,270,000	34,270,000	34,270,000	34,270,000	102,810,000
	5층	4	148,650,000	201,150,000	349,800,000	10,000,000	24,980,000	34,980,000	34,980,000	34,980,000	34,980,000	34,980,000	34,980,000	104,940,000
	6~15층	1	153,370,000	207,530,000	360,900,000	10,000,000	2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108,270,000
	16~29층	1	156,260,000	211,440,000	367,700,000	10,000,000	2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110,310,000
46.9200B	1층	1	140,360,000	189,940,000	330,300,000	10,000,000	23,030,000	33,030,000	33,030,000	33,030,000	33,030,000	33,030,000	33,030,000	99,090,000
	2층	2	144,190,000	195,110,000	339,300,000	10,000,000	23,930,000	33,930,000	33,930,000	33,930,000	33,930,000	33,930,000	33,930,000	101,790,000
	3~4층	4	147,250,000	199,250,000	346,500,000	10,000,000	2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103,950,000
	5층	2	150,310,000	203,390,000	353,700,000	10,000,000	25,370,000	35,370,000	35,370,000	35,370,000	35,370,000	35,370,000	35,370,000	106,110,000
46.8900C	2층	1	140,410,000	189,990,000	330,400,000	10,000,000	2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99,120,000
	3~4층	4	143,380,000	194,020,000	337,400,000	10,000,000	23,740,000	33,740,000	33,740,000	33,740,000	33,740,000	33,740,000	33,740,000	101,220,000
	5층	2	146,350,000	198,050,000	344,400,000	10,000,000	24,440,000	34,440,000	34,440,000	34,440,000	34,440,000	34,440,000	34,440,000	103,320,000
	6~15층	2	150,990,000	204,310,000	355,300,000	10,000,000	25,530,000	35,530,000	35,530,000	35,530,000	35,530,000	35,530,000	35,530,000	106,590,000
	16~29층	1	153,830,000	208,170,000	362,000,000	10,000,000	2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108,600,000
59.8700A	1층	41	175,250,000	237,150,000	412,400,000	10,000,000	31,240,000	41,240,000	41,240,000	41,240,000	41,240,000	41,240,000	41,240,000	123,720,000
	2층	51	180,050,000	243,650,000	423,700,000	10,000,000	32,370,000	42,370,000	42,370,000	42,370,000	42,370,000	42,370,000	42,370,000	127,110,000
	3~4층	125	183,880,000	248,820,000	432,700,000	10,000,000	33,27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129,810,000
	5층	61	187,700,000	254,000,000	441,700,000	10,000,000	34,170,000	44,170,000	44,170,000	44,170,000	44,170,000	44,170,000	44,170,000	132,510,000
	6~15층	197	193,650,000	262,050,000	455,700,000	10,000,000	35,570,000	45,570,000	45,570,000	45,570,000	45,570,000	45,570,000	45,570,000	136,710,000
	16~29층	157	197,260,000	266,940,000	464,200,000	10,000,000	3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139,260,000
59.5200B	1층	20	172,700,000	233,700,000	406,400,000	10,000,000	30,640,000	40,640,000	40,640,000	40,640,000	40,640,000	40,640,000	40,640,000	121,920,000
	2층	20	177,420,000	240,080,000	417,500,000	10,000,000	31,75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125,250,000
	3~4층	40	181,200,000	245,200,000	426,400,000	10,000,000	32,640,000	42,640,000	42,640,000	42,640,000	42,640,000	42,640,000	42,640,000	127,920,000
	5층	20	184,980,000	250,320,000	435,300,000	10,000,000	33,530,000	43,530,000	43,530,000	43,530,000	43,530,000	43,530,000	43,530,000	130,590,000
	6~15층	58	190,810,000	258,190,000	449,000,000	10,000,000	3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134,700,000
	16~29층	56	194,420,000	263,080,000	457,500,000	10,000,000	35,750,000	45,750,000	45,750,000	45,750,000	45,750,000	45,750,000	45,750,000	137,250,000
84.6000A	1층	19	234,580,000	317,420,000	552,000,000	10,000,000	4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65,600,000
	2층	38	240,990,000	326,110,000	567,100,000	10,000,000	46,710,000	56,710,000	56,710,000	56,710,000	56,710,000	56,710,000	56,710,000	170,130,000
	3~4층	76	246,130,000	333,070,000	579,200,000	10,000,000	47,920,000	57,920,000	57,920,000	57,920,000	57,920,000	57,920,000	57,920,000	173,760,000

	5층	37	251,230,000	339,970,000	591,200,000	10,000,000	49,120,000	59,120,000	59,120,000	59,120,000	59,120,000	59,120,000	59,120,000	177,360,000
	6~15층	240	259,180,000	350,720,000	609,900,000	10,000,000	50,990,000	60,990,000	60,990,000	60,990,000	60,990,000	60,990,000	60,990,000	182,970,000
	16~29층	183	264,070,000	357,330,000	621,400,000	10,000,000	52,140,000	62,140,000	62,140,000	62,140,000	62,140,000	62,140,000	62,140,000	186,420,000
84.1300B	1층	4	231,520,000	313,280,000	544,800,000	10,000,000	4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163,440,000
	2층	5	237,850,000	321,850,000	559,700,000	10,000,000	45,970,000	55,970,000	55,970,000	55,970,000	55,970,000	55,970,000	55,970,000	167,910,000
	3~4층	10	242,900,000	328,700,000	571,600,000	10,000,000	47,160,000	57,160,000	57,160,000	57,160,000	57,160,000	57,160,000	57,160,000	171,480,000
	5층	5	247,960,000	335,540,000	583,500,000	10,000,000	48,350,000	58,350,000	58,350,000	58,350,000	58,350,000	58,350,000	58,350,000	175,050,000
	6~15층	33	255,780,000	346,120,000	601,900,000	10,000,000	50,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180,570,000
	16~29층	25	260,580,000	352,620,000	613,200,000	10,000,000	51,320,000	61,320,000	61,320,000	61,320,000	61,320,000	61,320,000	61,320,000	183,960,000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 요망).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주택형의 표기는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바랍니다.
- 건본주택은 39,59A,84A,84B타입이 설치될 예정이며, 46A,46B,46C,59B타입은 건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모델하우스 내 건본주택 모형 혹은 분양안내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옵션)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의 층을 각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분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불가)
-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 27호에 의거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모든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2017년 1월 20일부터 체결하는 최초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토지법」 제9조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2005.07.01. 주민등록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색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구 분		39	46A	46B	46C	59A	59B	84A	84B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21	1	1	1	29	9	27	4	93	
	국가유공자등 (35조, 36조)	8	1	-	-	12	3	11	1	36	
	장기복무제대군인	-	-	-	-	1	2	1	1	5	
	중소기업종사자	7	-	-	-	12	4	11	2	36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3	-	-	-	4	2	4	1	14	
	우수선수	2	-	-	-	3	1	3	-	9	
	납북피해자	2	-	-	-	3	1	3	-	9	
다자녀 특별공급	경기도(50%)	22	1	1	1	32	11	30	5	103	
	서울/인천(50%)	21	1	-	-	32	11	30	4	99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64	3	2	2	95	32	89	13	300
		일반공급(25%)	21	1			32	11	30	4	9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3	1	-	-	19	7	18	3	61	
		184	9	4	4	274	94	257	38	864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항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또는 부적격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li>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요건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1호부터 6호, 8호 중 제35조 1항 17호 제외)</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 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와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li> <li>-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li> </ul> </li> </ul> <p>※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배우자 포함)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p>



	<p>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p>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총 납입 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청약저축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없이 예치금 잔액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함)</li> </ul> </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총 납입 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없이 예치금 잔액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함)</li> </ul> </li> </ul> </li> </ul>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 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li> <li>•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제외)</li> <li>※ 추천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등 : 경기남부 보훈지청복지과</li> <li>② 장애인 : 경기도청·서울시청·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li> <li>③ 10년이상 복무한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li> <li>④ 중소기업근로자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li> <li>⑤ 우수선수 : 대한체육회 ⑥ 납북피해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 하여야 하며, 노약자·인터넷 취약자만 견본주택 방문신청 가능함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li> <li>•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li> </ul>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시 해당지역(안양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함</li> <li>※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됨)</li> <li>※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li> <li>※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li> <li>※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li> </ul>	<p>“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미달 시 타 시·도에 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li> <li>(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li> </ol> </li> </ul>
<p>신혼부부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를 말한다.) 이하일 것</li> <li>•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함.</li> <li>※ 임신의 경우 청약신청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li> <li>※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li> <li>※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 주택 수의 75%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 따른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함.)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li> </ul> </li> <li>•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를 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li> <li>(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li> </ol> </li> </ul> </li> <li>•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주택건설 지역(안양시) 거주자</li> <li>(2)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를 포함)</li> <li>(3) 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li> </ol> </li> <li>※ 상기 미성년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이 경우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를 말함.)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li> </ul>
<p>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주택건설 지역(안양시) 거주자가 우선함.</li> <li>(2)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li> </ol> </li> </ul>

<p>(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ul> </li> <li>※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조항은 해당 특별공급에 미적용됨.</li> <li>※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의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건본주택에 비치)</li> <li>※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li> </ul>
---	--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자 선정 후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관련된 전화문의는 일체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자(정보취약 계층)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입주자선정과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거주지역이 수도권이 아닌 자가 수도권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특별공급 유의 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함.(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영유아 2명	10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의 무주택기간은 성년(만19세)이 된 날로부터 산정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거주한 기간은 성년(만 19세)이 된 날로부터 기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0	
		1년 이상~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우선공급의 경우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공급유형	월평균 소득기준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5인	6인	7인	8인
민영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002,590원	5,846,903원	6,220,005원	6,625,810원	7,031,615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003,108원	7,016,284원	7,464,006원	7,950,972원	8,437,938원
	일반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002,591원 ~ 6,003,108원	5,846,904원 ~ 7,016,284원	6,220,006원~7,464,006원	6,625,811원~7,950,972원	7,031,616,원~8,437,938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003,109원 ~ 6,503,367원	7,016,285원 ~ 7,600,974원	7,464,007원~8,086,007원	7,950,973원~8,613,553원	8,437,939원~9,141,100원

있는 경우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월평균소득 (405,805원)} \* (N-8) ※ N→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포함)]전원으로 산정함.(단,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특별공급 당첨자 동·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

<p>동·호수 결정방법</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5조,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p>
<p>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li>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함.</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li> <li>•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공개기간(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다음날 소멸됨.</li> <li>•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하고,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urvine.co.kr">http://www.urvine.co.kr</a>)에 공개함.</li> </ul>
<p>특별공급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에 대하여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정부 주택전산망, 주민등록 전산망 및 금융결제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 결과 청약자격 착오입력 등에 따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청약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하시기 바람.</li> <li>•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 및 입주자선정기준 등은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청약제도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li> <li>•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li> <li>• 특별공급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li> <li>•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함.</li> <li>• 견본주택 현장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한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li> <li>•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li> <li>•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li> <li>•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함.</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li> <li>• 특별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동·호수를 배정)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li> <l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 및 예비입주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li> </ul>

###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공통사항

<p>신청 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5.24.(목)) 현재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li> <li>- 이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의거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2018.5.24.(목))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 가능합니다. 단,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5.24.(목))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li> </ul>
<p>청약 신청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동일 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가 우선함</li> <li>-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li> <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함.</li> <li>-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함.</li> <li>-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중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li> <li>-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거주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li> <li>-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단, 청약당일 청약 시간 내에 수정가능),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li> <li>-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함.</li> <li>- 청약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li> <li>-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li> <li>-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li> </ul>

-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 거주신청자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2순위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단,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없이 예치금 잔액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함)
  - ④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규칙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적용할 때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경기도(안양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 든 면 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 40% / 추첨제 60%를 적용함</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가점제 접수]</li> <li>①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자</li> </ul> <p>※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p>	안양시 / 수도권
	2순위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자 / 추첨제</li> </ul>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2호 나목

가점 항목	가점	가 점 구 분	점수	가 점 구 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li> <li>(배우자 분리 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li> </ul>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점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부양가족수 산정) ※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총 점			84점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특별공급 제외)

● 청약가점제 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 기간	<p>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p> <p>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② 부양 가족의 인정	<p>1) 부양가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8.5.24.(목)) 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p>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미등기주택)
  -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
-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한해 소형·저가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중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함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2조의2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IV 청약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거주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특별공급	안양시 / 수도권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8.05.29(화) (APT2you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홈페이지(<a href="http://www.ap2you.com">www.ap2you.com</a>-국민은행 가입자 포함)</li> <li>• 사업주체 건본주택</li> </ul>
일반공급	안양시 / 수도권	1순위	2018.05.31.(목) 08:00~17:30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a href="http://www.ap2you.com">www.ap2you.com</a>)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li> <li>•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a href="http://www.kbstar.com">www.kbstar.com</a>)</li> </ul>
		2순위	2018.06.01(금) 08:00~17:30	인터넷 청약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http://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2순위)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 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 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인터넷청약 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기관추천 (일반)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청약신청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등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배우자	이혼,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혼인여부 확인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 필요시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이상 세대원 전원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표 소득입증관련 제출 서류 참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 (쑈 은행 청약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구비사항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li>※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사항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V 당첨자 발표 및 선정 방법

### ■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2018.06.08.(금)</li> <li>확인방법</li> <li>-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www.urvine.co.kr) 조회</li> <li>- 아파트투유(www.ap2you.com) 개별조회</li> <li>*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2018.06.19 (화) ~ 06.21 (목) 3일간 (10:00~16:00)</li> <li>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39 일원)</li> </ul>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www.urvine.co.kr) 조회</li> <li>- 아파트투유(www.ap2you.com) 개별조회</li> <li>*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2018.06.19 (화) ~ 06.21 (목) 3일간 (10:00~16:00)</li> <li>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39 일원)</li> </ul>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 (손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2018. 06. 08 (금) ~ 2018. 06. 17 (일) (10일간)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APT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조회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2017.06.15.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18.06.08.(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전화(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 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li> <li>•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서울시 및 인천시,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거주자 신청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li>•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 지역 추첨제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li>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함)</li> </ul>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li> <li>•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li> <li>•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하고,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urvine.co.kr)에 공개함.</li> </ul>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VI 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18. 06. 19 (화) ~ 06. 21 (목) 3일간, 10:00 ~ 16:00	건본주택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39 일원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 계약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당첨자)	○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변동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청약자가 본인이 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인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통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수도권 거주자로 당첨 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본인의 전부)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다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당첨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분양대금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214901-04-304216	호원초등학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본·지점 무통장 입금 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한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 : 102동503호 홍길동 → 1020503홍길동)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2차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지정)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사업주체에서 금융기관에 대납하며, 입주개시(지정)일 이후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중도금 이자후불제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에서 금융기관에 대납하였으므로,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대출이자를 잔금과 함께 사업주체에 납부해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이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자 입주예정일 : 2021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단, 기 납입한 선납 할인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 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따라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휘트니스, 주민카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옥외포함), 어린이놀이터(유아놀이터 포함) 등

## Ⅶ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 및 납입 비율등은 추후 별도 공지함.
- 유상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유상옵션 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설치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빌트인 김치냉장고 (LG/삼성)	인덕션하이브리드 쿡탑		광파오븐	거실중문 (3연동)	주방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린나이	SK매직			
39	-	600,000	780,000	440,000	2,180,000	1,900,000
46A, 46B, 46C	1,250,000	600,000	780,000	440,000	-	3,000,000
59A, 59B	1,250,000	600,000	780,000	440,000		3,100,000
84A, 84B	1,250,000	600,000	780,000	440,000		3,900,000

※ 주방가전 제품(유상옵션)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조건 및 일정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안내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KB국민은행	214901-04-304203	(주)포스코건설(외3)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어컨은 추가선택품목으로 향후 별도 공지함.

## VIII 마이너스 옵션 관련 안내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은 각 주택형별로 상이함으로 계약전 견본주택에 내방하시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
일괄선택	바닥재	마루, 타일, 걸레받이 굵도리,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	바닥난방 배관,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

(개별선택불가)		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우수선홍통, 수공간바닥방수(보호몰탈시공)
	벽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마감 일체(타일 등), 아트월(타일, 판넬 등 일체포함)	석고보드 마감, 단열공사, 조직공사, 미장공사, 발코니벽도장, GAS배관
	천장	천장지(초배지 포함), 등박스(우물천장포함), 반자돌림(몰딩 포함)	천장을 위 석고보드, 발코니 천장도장, 소방시설, 세대환기시스템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직부등, 매입등, 센서등 일체)	배선기구류 (스위치 및 콘센트)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수전류, 액세서리,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타일, 욕실폰, 욕실선반, 욕실 인테리어(젠다이 및 상판, 스위치, 콘센트, 거울 등 마감 일체)	조적, 방수, 미장, 전기설비 배관/배선 설비배관(급,배수), 배기덕트
	주방	본주방 및 다용도실 주방가구 및 가전류 일체(가스쿠파, 후드 등), 가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수전류(수전, 절수페달밸브 포함), 주방TV폰, 렌지후드	설비배관(급수, 난방 등 매립배관 및 가스배관) 주방배기덕트, 자동식소화기
	창호	목창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등 일체) 및 욕실문,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포함), 디지털 도어록	각실 내부 PL창호,세대현관 방화문
	가구 및 기타사항	가구류 일체(신발장, 드레스룸장, 시스템가구 및 문짝,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불박이장, 자녀방 수납장 등), 수전류(발코니, 다용도실)	설비배관(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월패드

■ 마이너스 옵션 금액

주택형	39	46A	46B	46C	59A	59B	84A	84B
마이너스옵션	20,140,000	23,640,000	23,910,000	23,750,000	29,290,000	30,010,000	34,020,000	33,130,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종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 하여야 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세대마감공사(인테리어공사 포함)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함.(시설물 인수인계후, 공사중 계약자 임의 공사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 책임임)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의거 입주지정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게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이 미포함됨.
-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IX 기타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일반공급의 경우이며,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해당됨)
  - 주택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노부모 특별공급시 유주택자로 간주함)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 2)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5.24.(목))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5.24.(목))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05.24.(목))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5.24.(목))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5.24.(목))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 가격으로 봄. (단, 청약가점제 시행전인 2007.9.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9.1.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을 해당 “소형·저가 주택”의 주택가격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 제5조]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기관추천(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제외)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전산검색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분도 포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상기 “가점제 및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 바람.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가능함.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
- 청약 및 계약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를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지역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수 없음.

■ 공통브랜드 사용

- 당 사업지는 (주)포스코건설, SK건설(주), (주)대우건설, 현대건설(주)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평촌 어바인 퍼스트"라는 브랜드를 사용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브랜드 관련 어떤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택분양 및 거래(입주)시 안전관련 정보 제공

분양	법적의무사항	추가 및 보완 제공 내용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	1.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2.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가스센서/가스차단장치] 설치
풍수해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배수펌프 설치
지진	내진능력(MMI등급)	건축구조 기준 (2009 국토해양부고시)에 의한 내진 능력 :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169g
방범	CCTV 설치	1. 아파트 각동 1층,2층 및 최상층 동체 감지기 설치 2.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출입구에 카메라 설치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장애인 안전	장애인 이동통로	출입구 경사로, 점자블럭
어린이 안전	놀이터 안전등급	안전인증검사에 통과된 놀이시설물 설치 및 어린이낙하에 안전한 두께의 고무칩포장재 사용
노약자 안전	보도블럭 미끄럼방지	안전한 보행성 확보를 위한 표면가공을 통한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가진 포장재 사용
친환경	마감자재, 설계기준	1. 친환경 주택성능 평가 설계, 2. 건강친화형주택 설계, 3. 녹색건축인증 설계

■ 기타사항(공통)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창구 청약자께서는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계약자 선택사항에 대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공부철차 즉 준공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음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함.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름.
- 당해지구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기 바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음.
- 본 공공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단지 여건사항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람, 현장여건 미 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개발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위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경비실, 어린이집, 경로당, 지하주차장환기구, 자전거보관소, 발전기, 조명시설, 휴게소,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문주, 외부계단, 셔틀엘리베이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위치와 크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부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냄새, 진동, 일조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세대 또는 저층세대는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인근에 위치한 저층 일부세대에 차량조명으로 인한 간섭 및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지하 주차장의 주차 구획까지의 동선 거리, 주동 출입 방법 등이 다르므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101동, 102동, 201동, 202동은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생활소음,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장비류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101동, 102동, 105동, 106동, 111동, 112동 115동, 118동, 201동, 202동, 205동, 206동, 211동, 212동은 차량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하여 차량소음,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각동 주변에는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수경공간 등이 인접하여, 생활소음 등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정비계획에 따라 104동 서측에는 기존 성당이 존치되며, 108동, 109동 서측, 113동, 114동 북측으로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되어 있어 소음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경수대로와 주동(101동, 106동, 201동, 206동) 사이에는 방음벽(높이5M)이 설치됨.
-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한 세대에는 생활소음 발생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인접 공원 등은 모형, CG 등 분양 카달로그 내용과 다르게 인허가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경관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출입구의 문주설치에 따라 일부세대에 시야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비상차량(택배차량, 재활용품 수거 차량 포함)에 의한 보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함은 각 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 상 층간, 세대간 생활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주동에(110,115,210동) 정화조배기관이 설치됨
- 외부 조경공간의 위치, 주동출입 접근로, 비상차로, 산책로 및 쓰레기수거장 위치 등이 분양이후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통해 변경 예정. 단,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 및 선형,폭원등은 다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주동 출입동선 상부에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캐노피가 설치되며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 세대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 계획 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운행중 진동,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아파트에서 층단차부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홀에 창호가 없는 층이 생길 수 있음.

- 주동 저층부(3층이하) 외부마감에서 창호주위는 도장마감으로 시공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기계/전기실, 환기창,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주거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어린이집, 경로당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식재공간,광장,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휴게소 등) 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쓰레기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일부 규모,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어린이집/관리사무소, 비주거부분 등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탈취기 및 급배기, 환기휀, 냉각탑,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경수대로변의 완충녹지와의 대지경계선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등에 의해 일부 세대에서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법적의무시설로서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음.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하며 사다리차 사용은 불가함.
- 학교용지법 제3조에 의거 호원지구 3,850세대에서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동 지구 내 학교용지가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었음.
- 초등학교는 신설 예정교(가칭 호계1초)에 배치 예정이나, 학교 신설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입주시기에 개교 지연시 인근학교로 임시 배치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동안중학교 내 배치 예정임.
- 추후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 세대수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재협의 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관계규정에 의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존한 후 임의로 철거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조감도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시공 시 단지 내·외부의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기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분양가 미포함)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 및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을 위한 조명은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수납가구와 욕실 가구 및 샤워부스, 마루, 목창호, 방화문 및 발코니 핸드레일은 본공사 시 시공사 별 입찰결과에 따라 제조사,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분양 관련 팸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시설물의 위치 및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이 계약 체결일 이후 설계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인허가 내용대로 시공됨.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Mockup(현장 내 실물 크기의 모형)세대로 시공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면적은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의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공간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전기실, 기계실, 지하저수조 등은 공사 사정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색채, 외장재료, 축벽 디자인, 창호형태 및 색채 등),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동현관, 지하출입구, 난간의 디테일, 문주, DA(Dry Area)등 외부시설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실제 대지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건축물 배치구도,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 안내 등)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 세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로서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거실의 우물천장의 크기는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대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화재시 구조대기를 위하여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해야 함.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 될 수 있음.
- 무인택배보관소는 단지 주출입구 경비실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은 평형별로 차이가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사용 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사업부지 외에 나머지 부지(도로, 공원, 녹지, 학교부지 등)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일부 설계변경될 수 있음.
- 각 주동별로 형태가 상이하여 주동 ELEV, 계단실 위치가 다를 수 있고, 주동형태별로 ELEV홀 창호의 크기, 위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향후 단지외관 향상을 위하여 주동부의 옥상장식물과 외부 색채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건물외벽 사인물 설치시 실시공사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됨.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동일 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깊이가 다를 수 있음.
- 동, 호수 지정 시 동일 평면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내·외·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모형, CG, 카탈로그 등)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비상차도, 보도 등)의 경사도는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 및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인접 외부 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위해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시설 중 수경시설은 준공 후 사용 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 기관 심의결과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통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텃밭, 휴게공간 등), 부대복리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 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대지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블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팸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자재의 품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 천연자재는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Vein:베인)이 균질하지 않을수 있으며, 실시공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결(Vein:베인)이 다를 수 있음.
- 천연석은 천연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베인이 다를 수 있음.
-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품질 또는 성능을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의 경우, 입주 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성능저하에 대해서는 "수분양자 (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함.
- 외부 창호 디자인, 분할크기, 프레임 재료 및 사이즈, 유리 두께, 설치 높이, 창호색상 등은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 높이, 폭, 창호색상)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부 창호 프레임 색상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높이, 형태, 색상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되었음.
-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 공간으로서 난방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외부창호 설치로 인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손상이 있을 수 있음.
- 생활환경(대형수족관 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기, 가슴기 가동, 과도한 음식물 조리 등)에 의한 과다습기 발생, 단열성능/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인한 세대 내부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상대습도 증가)등으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 및 난방가동 등 적정 상대습도 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함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북측 세대는 단위세대 방향에 따른 일사량 차이로 결로 발생에 취약한 경우 개별적인 보완을 해야 하며 추후 이에 관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실 배치, 구조, 구획, 내/외부마감, 옥상장식물 등이 설계변경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은 공간만 제공되며, 일부 시설에 한하여 집기가 제공됨.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의 마감재 및 가구는 실 시공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 주민공동시설은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으로 구성됨.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수경시설, 운동시설, 놀이시설, 경관조명 등)은 공동주택과 비주거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음.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지하층 바닥은 타일, 벽은 타일 및 도장마감 기준이며, 1층 바닥은 석재, 벽은 타일 및 도장마감 기준, 기준층의 바닥은 타일, 벽은 도장마감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이는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열재는 2015년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설치됨.
- 붙박이 가구가 설치되는 부위의 상/하부 및 벽부(일반가구, 주방가구, 욕실가구, 거울마감 등)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 및 천연자재(천연석재, 마루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예 : 욕실장 후면 타일 미시공, 붙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홈스타일초이스 공간선택형에 따라 도어의 위치 및 사이즈, 색상, 마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선택형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길이 및 형태가 달라짐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천정에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높이가 달라질 수 있음.
- 세대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수납가구 및 주방가구 내부에 적용된 약세서리 및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공구별 시공사에 따라 제조, 사양 및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거실/복도 바닥, 욕실 벽/바닥,발코니 바닥, 복도/거실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는 실시공시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모델하우스 및 사업승인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음.
- 세대 내 우물천정 높이는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정고 및 길이/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져 있는 벽, 바닥, 천장의 최종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 샤워부스, 위생기구 하부 등 일부 공간은 난방이 적용되지 않음.
- 74타입의 붙박이장 위치 및 길이, 디자인이 타 타입과 상이하며, 붙박이장 설치 시 배면의 벽체와의 공간이 생길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월패드, 주방TV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함.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함.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 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바랍니다. 에어컨 실외기실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실외기실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거실 및 안방 매립박스 전원 미공급)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들이 개별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음.
- 도시가스 배관 및 미터기가 설치되며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특정세대 내에 가스정압기(감압기) 또는 신축엘보가 설치될 수 있음.
-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사이즈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 다용도실과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천장은 거실기준 천장=2.3m이며, 실외기,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 현관은 상이함. (층상배관에 의해 일부 천장기준(2.3M)과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희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단지 우, 우수는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에 따라 환기 설비 및 배관 덕트가 노출될 수 있고 세탁실에 환기유니트가 있을 경우 점검구가 설치되며 도어 높이 및 천정고가 변경될 수 있음.
- 환기 덕트 배관 인입부에 커튼박스가 설치 안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의 접근이 코어 당 한 개소로만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급배기구, D/A, 정화조배기구)이 노출되어 일부 인접 세대에서는 소음 및 시선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지하주차장 바닥마감은 예폭시 코팅기준임.
- 지하주차장 일부구간에는 PC구조로 적용됨.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PC+RC 복합화 구조이며, 주차장 기둥의크기는 RC와 PC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고 PC부재(기둥, 보, 슬라브등)의 크기, 모양, 강도 등은 시공사의 공법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음.
- 세대수 및 층수 차이 등에 의해 코어별로 엘리베이터의 사양, 속도, 크기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에는 추가적으로 오·우수 배관을 위한 공간이 설치될 수 있음.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발전시스템,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리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 정압기 시설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고기밀 창호	○	기밀성등급 1등급, 확장형 발코니 외벽창호
고효율기자재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품 또는 KS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기계실
대지전력차단장치	○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	세대 내에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	세대 및 공용부위의 조명기구는 고효율조명기구를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	컨트롤유닛 및 실내온도조절기, 각 실
절수설비	○	절수형 수전(샤워수전, 세면기수전, 싱크수전), 주방 또는 욕실

<h3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예비 인증서</h3> <h4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예비 인증서</h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50%;">건축물 개요</th> <th style="width: 50%;">인증 개요</th> </tr> <tr> <td>           건축물명 : 호원지구 주택 재개발 아파트            건축주 : 호원지구주택재개발건설사업조합            준공(예정)일 : 2020년 6월            주소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층 수 : 지상29층, 지하3층            연 면 적 : 514,616.17㎡ (3,850세대)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정동종합건축사사무소         </td> <td>           인증번호 : 2016-077            인증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유효기간 : 2016. 9. 26. ~ 사용승인일까지            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td> </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종합등급 ★☆☆☆</p> </div> <p style="text-align: right;">2016년 9월 26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인)</p> <p><small>*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small></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호원지구 주택 재개발 아파트 건축주 : 호원지구주택재개발건설사업조합 준공(예정)일 : 2020년 6월 주소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층 수 : 지상29층, 지하3층 연 면 적 : 514,616.17㎡ (3,850세대)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정동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016-077 인증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유효기간 : 2016. 9. 26. ~ 사용승인일까지 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h3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h3> <h4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명 : 호원지구 주택 재개발 아파트</li> <li>신청자 : 호원지구주택재개발건설사업조합</li> <li>대지위치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li> <li>성능등급</li> </o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3">가. 소음 관련 등급</th> </tr> <tr> <td>생활방주</td> <td>새부 성능항목</td> <td>성능등급</td> </tr> <tr> <td>경향중격음 차단성능</td> <td>***</td> <td>***</td> </tr> <tr> <td>중량중격음 차단성능</td> <td>**</td> <td>**</td> </tr> <tr> <td>최정실 급배수소음</td> <td>***</td> <td>***</td> </tr> <tr> <td>세대간 경계벽의 진동성능</td> <td>***</td> <td>***</td> </tr> <tr> <td>외부소음</td> <td>공동수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3">나. 구조 관련 등급</th> </tr> <tr> <td>생활방주</td> <td>새부 성능항목</td> <td>성능등급</td> </tr> <tr> <td>기밀성</td> <td>*</td> <td>*</td> </tr> <tr> <td>수리용이성</td> <td>전술부분 *</td> <td>*</td> </tr> <tr> <td>대구성</td> <td>공용부분 *</td> <td>*</td> </tr> <tr> <td>지속가능한 자원활용 (인도비탈 시에만 평가)</td> <td>주요구조부 재사용</td> <td>*</td> </tr> <tr> <td></td> <td>비내력벽 재사용</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3">다. 환경 관련 등급</th> </tr> <tr> <td>생활방주</td> <td>새부 성능항목</td> <td>성능등급</td> </tr> <tr> <td>생태친화적</td> <td>과연적인 녹지율</td> <td>*</td> </tr> <tr> <td>조경</td> <td>연계된 녹지 조성</td> <td>-</td> </tr> <tr> <td></td> <td>비오물 조성</td> <td>***</td> </tr> <tr> <td>절터리까지</td> <td>기온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td> <td>***</td> </tr> <tr> <td>인경대지 영향</td> <td>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td> <td>-</td> </tr> <tr> <td>레크리에이션 확보율</td> <td></td> <td>*</td> </tr> <tr> <td>실내공기질</td> <td>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율 제속의 적용</td> <td>***</td> </tr> <tr> <td></td> <td>단위 체온의 온도상승률도 여부</td> <td>***</td> </tr> <tr> <td></td> <td>실내공기 질도 측정</td> <td>-</td> </tr> <tr> <td>생활용 위소향</td> <td>생활용 위소향 사용의 타당성</td> <td>*</td> </tr> <tr> <td>폐물 배출을 분리수거</td> <td>생활용 위소향 사용의 타당성</td> <td>***</td> </tr> <tr> <td></td> <td>폐물 배출을 분리수거</td> <td>***</td> </tr> <tr> <td></td> <td>폐물 배출을 분리수거</td> <td>***</td> </tr> <tr> <td>편한거주 환경 조성</td> <td>편한거주 환경을 위한 친환경 건축재료 사용 여부</td> <td>*</td> </tr> <tr> <td></td> <td>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공개</td> <td>***</td> </tr> <tr> <td>우수부하 절감</td> <td>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td> <td>-</td> </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6년 9월 26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인)</p>	가. 소음 관련 등급			생활방주	새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향중격음 차단성능	***	***	중량중격음 차단성능	**	**	최정실 급배수소음	***	***	세대간 경계벽의 진동성능	***	***	외부소음	공동수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나. 구조 관련 등급			생활방주	새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기밀성	*	*	수리용이성	전술부분 *	*	대구성	공용부분 *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인도비탈 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		비내력벽 재사용	-	다. 환경 관련 등급			생활방주	새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태친화적	과연적인 녹지율	*	조경	연계된 녹지 조성	-		비오물 조성	***	절터리까지	기온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인경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레크리에이션 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율 제속의 적용	***		단위 체온의 온도상승률도 여부	***		실내공기 질도 측정	-	생활용 위소향	생활용 위소향 사용의 타당성	*	폐물 배출을 분리수거	생활용 위소향 사용의 타당성	***		폐물 배출을 분리수거	***		폐물 배출을 분리수거	***	편한거주 환경 조성	편한거주 환경을 위한 친환경 건축재료 사용 여부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공개	***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h3 style="text-align: center;">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h3> <h4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h4> <p>*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50%;">건축물 개요</th> <th style="width: 50%;">인증 개요</th> </tr> <tr> <td>           건축물명 : 호원지구 주택재개발 아파트            준공연도 : 2022년 01월 08일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층 수 : 지하 3층, 지상 15~29층(22+12계동)            연 면 적 : 514616.17(㎡)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정동종합건축사사무소         </td> <td>           인증번호 : 16-주-에-2-0151            평가자 : 정광삼            인증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유효기간 : 한국시설안전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td> </tr> </table> <h4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h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WH/㎡·년)</th> <th>요구량</th> <th>1차 에너지소비량(WH/㎡·년)</th> <th>등급</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kg/㎡·년)</th> <th>배출량</th> </tr> <tr> <td>에너지소비량(이중계)</td> <td>101.8</td> <td>29.9</td> <td>2</td> <td>29.9</td> <td>29.9</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5">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th> </tr>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WH/㎡·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WH/㎡·년)</th> <th>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WH/㎡·년)</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 </tr> <tr> <td>냉방</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난방</td> <td>51.5</td> <td>69.0</td> <td>53.3</td> <td>11.8</td> </tr> <tr> <td>급탕</td> <td>30.7</td> <td>38.1</td> <td>28.9</td> <td>6.4</td> </tr> <tr> <td>조명</td> <td>19.6</td> <td>19.6</td> <td>54.0</td> <td>9.2</td> </tr> <tr> <td>합계</td> <td>101.8</td> <td>132.1</td> <td>151.0</td> <td>29.9</td> </tr>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또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재차, 기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 에너지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p> <p>*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 설치됨 [✓]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6년 09월 20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인)</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호원지구 주택재개발 아파트 준공연도 : 2022년 01월 08일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층 수 : 지하 3층, 지상 15~29층(22+12계동) 연 면 적 : 514616.17(㎡)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정동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16-주-에-2-0151 평가자 : 정광삼 인증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유효기간 : 한국시설안전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WH/㎡·년)	요구량	1차 에너지소비량(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kg/㎡·년)	배출량	에너지소비량(이중계)	101.8	29.9	2	29.9	29.9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51.5	69.0	53.3	11.8	급탕	30.7	38.1	28.9	6.4	조명	19.6	19.6	54.0	9.2	합계	101.8	132.1	151.0	29.9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호원지구 주택 재개발 아파트 건축주 : 호원지구주택재개발건설사업조합 준공(예정)일 : 2020년 6월 주소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층 수 : 지상29층, 지하3층 연 면 적 : 514,616.17㎡ (3,850세대)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정동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016-077 인증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유효기간 : 2016. 9. 26. ~ 사용승인일까지 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가. 소음 관련 등급																																																																																																																																																									
생활방주	새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향중격음 차단성능	***	***																																																																																																																																																							
중량중격음 차단성능	**	**																																																																																																																																																							
최정실 급배수소음	***	***																																																																																																																																																							
세대간 경계벽의 진동성능	***	***																																																																																																																																																							
외부소음	공동수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나. 구조 관련 등급																																																																																																																																																									
생활방주	새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기밀성	*	*																																																																																																																																																							
수리용이성	전술부분 *	*																																																																																																																																																							
대구성	공용부분 *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인도비탈 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																																																																																																																																																							
	비내력벽 재사용	-																																																																																																																																																							
다. 환경 관련 등급																																																																																																																																																									
생활방주	새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태친화적	과연적인 녹지율	*																																																																																																																																																							
조경	연계된 녹지 조성	-																																																																																																																																																							
	비오물 조성	***																																																																																																																																																							
절터리까지	기온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인경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레크리에이션 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율 제속의 적용	***																																																																																																																																																							
	단위 체온의 온도상승률도 여부	***																																																																																																																																																							
	실내공기 질도 측정	-																																																																																																																																																							
생활용 위소향	생활용 위소향 사용의 타당성	*																																																																																																																																																							
폐물 배출을 분리수거	생활용 위소향 사용의 타당성	***																																																																																																																																																							
	폐물 배출을 분리수거	***																																																																																																																																																							
	폐물 배출을 분리수거	***																																																																																																																																																							
편한거주 환경 조성	편한거주 환경을 위한 친환경 건축재료 사용 여부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공개	***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호원지구 주택재개발 아파트 준공연도 : 2022년 01월 08일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층 수 : 지하 3층, 지상 15~29층(22+12계동) 연 면 적 : 514616.17(㎡)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정동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16-주-에-2-0151 평가자 : 정광삼 인증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유효기간 : 한국시설안전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WH/㎡·년)	요구량	1차 에너지소비량(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kg/㎡·년)	배출량																																																																																																																																																				
에너지소비량(이중계)	101.8	29.9	2	29.9	29.9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51.5	69.0	53.3	11.8																																																																																																																																																					
급탕	30.7	38.1	28.9	6.4																																																																																																																																																					
조명	19.6	19.6	54.0	9.2																																																																																																																																																					
합계	101.8	132.1	151.0	29.9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특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18-101-0007600호	644,868,07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증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의 범위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완료)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함.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함.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함.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함.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함.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음. 이하 같음.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함.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함.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함.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 관리 (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함.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함.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함.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함.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본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VAT포함)	비고
건축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9,739,202,000	
전기	(주)경민엔지니어링	1,256,757,961	
소방 및 정보통신	(주)신담엔지니어링	1,370,6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사	호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번지 4층	134171-0004612
시공사	(주)포스코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174611-0002979
	SK건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110111-0038805
	대우건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110111-2137895

	현대건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110111-0007909
--	------	------------------	----------------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39 일원

■ 사이버 견본주택 : [www.urvine.co.kr](http://www.urvine.co.kr)

■ 분양문의 : ☎ 1661-6075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